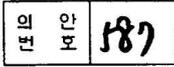


##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5.

제 출 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조례 제2245호('92. 9. 17)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직제의 경우 의사국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교육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능률적인 의사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직제중 총무담당관을 삭제하고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계장을 신설하여 교육위원회 운영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14042호, '93. 12. 31) 내용중 전문행정 수요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행정 직렬의 신설로 지방공직분류 체계가 개편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총무담당관을 삭제하고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계장을 신설하며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포함 (안 제 4조 제3항 및 제 4항)
- 나. 교육행정 직렬의 신설에 따라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함 (안 제4조 제3항)

### 3. 참고사항

“별 지 참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총무담당관 및 의사담당관 각 1인을 두며, 각 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의사담당관을 두며, 담당관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계장을 두며, 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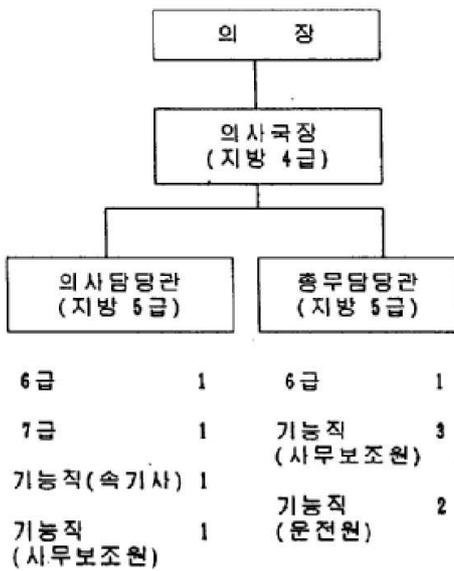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 4 조(조직) ① ~ ② (생략)</p> <p>③ 의사국에 총무담당관 및 의사담당관 각 1인을 두며, 각 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 신 설 )</p> | <p>제 4 조(조직) ① ~ ② (현행과같음)</p> <p>③ ..... 의사담당관을 두며, 담당관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p> <p>④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계장을 두며, 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

##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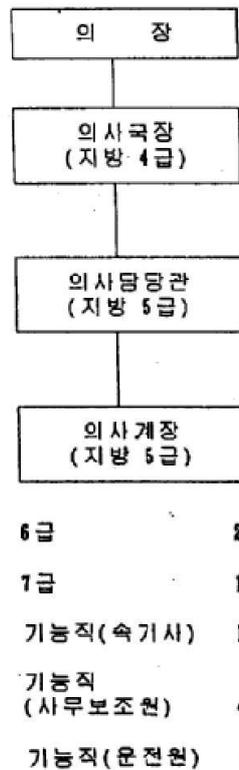
### 현 행

정수 : 13명



### 개 정 안

정수 :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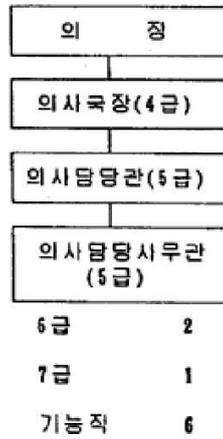


참 고 사 항

## 타시,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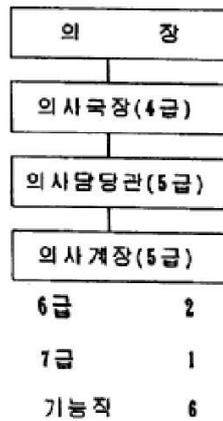
### ○ 인천광역시

(정원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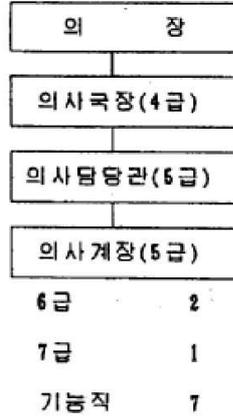
### ○ 대구광역시

(정원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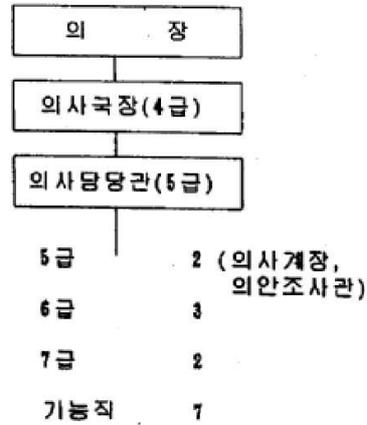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정원 13명)



○ 충청남도

(정원 16명)



관 련 법 령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증 개 정 령

제12606호(그2)

관

보

1993.12.31.(금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 희 광  
국무위원 최 현 우  
내무부장관

◎대통령령 제14,042호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령

제12606호(그2)

관

보

1993. 12. 31. (금요일)

|   |  |
|---|--|
| <p>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중 “공업·장무·농림·외무·보건·선박·수산·시설 및 통신직군”을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으로 한다.</p> <p>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8조의2(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대상)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진임용 : 전 공무원</li> <li>2. 전보임용 : 시·도의 경우는 5급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이상 공무원</li> </ol> <p>제9조제1항중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사위원회”로 한다.</p> <p>제17조제1항제6호전단중 “가사실업제정의 학과”를 “가사실업·도시계획제정의 학과”로 한다.</p> <p>제27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동항제3호·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민간기관·단체에서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이나 지방개발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p>제31조의6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을,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제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p> <p>제31조의6제3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마.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또는 바로 상위계급의 경력</p> <p>제31조의6제4항제1호다목중 “동일계급상당의 기능직”을 “동일계급 및 바로 상위계급상당의 기능직”으로, “동일계급상당의 6급이하”를 “동일계급 및 바로 상위 계급상당의 6급이하”로 하고, 동호사목중 “연구직공무원”을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p>아.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p> <p>제31조의6제4항제2호가목단서중 “연구직공무원”을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p> <p>제38조의4제1항제4호중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 10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를 “명예 퇴직하는 자로서”로 한다.</p> <p>[별표 1] 1급 내의 9급공무원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직렬조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직 중인 공무원중 조선택렬의 지방조선사무관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지방조선주사는 지방기계주사로, 지방조선주사보는 지방기계주사보로, 지방조선서기는 지방기계서기로, 지방조선서기보는 지방기계서기보로, 세공직렬의 지방제방사무관은 지방자원사무관으로, 지방제방주사는 지방자원주사로, 지방제방주사보는 지방자원주사보로, 지방제방서기는 지방자원서기로, 지방제방서기보는 지방자원서기보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영 시행당시 제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계 종사하는 자(지방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승위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모독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p> <p>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p> |
|---|--|

제12606호(그2)

관 보

1993. 12. 31. (금요일)

[별표 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관련)

| 직군    | 직별 | 직류  | 계           |                           |             |              |                   |                  |                   |                  |                   |             |
|-------|----|---|-------------|---------------------------|-------------|--------------|-------------------|------------------|-------------------|------------------|-------------------|-------------|
|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1. 행정 | 행정 | 일반행정<br>업무행정<br>계<br>국제교류<br>노동행정<br>문화정보<br>감사<br>물계 | 지방<br>관리관   | 지방<br>이사관                 | 지방<br>부이사관  | 지방<br>서기관    | 지방행정<br>사무관       | 지방행정<br>주사       | 지방행정<br>주사보       | 지방행정<br>서기       | 지방행정<br>서기보       |             |
|       |    | 세무  | 지방세<br>관    |                           |             |              |                   | 지방세무<br>주사       | 지방세무<br>주사보       | 지방세무<br>서기       | 지방세무<br>서기보       |             |
|       |    | 문수  | 문수<br>관     |                           |             |              |                   | 지방문수<br>주사       | 지방문수<br>주사보       | 지방문수<br>서기       | 지방문수<br>서기보       |             |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br>관   |                           |             |              | 지방<br>교육행정<br>사무관 | 지방<br>교육행정<br>주사 | 지방<br>교육행정<br>주사보 | 지방<br>교육행정<br>서기 | 지방<br>교육행정<br>서기보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br>관   |                           |             |              | 지방<br>사회복지<br>사무관 | 지방<br>사회복지<br>주사 | 지방<br>사회복지<br>주사보 | 지방<br>사회복지<br>서기 | 지방<br>사회복지<br>서기보 |             |
|       |    | 기업행정  | 기업행정<br>관   |                           |             |              | 지방<br>기업행정<br>사무관 | 지방<br>기업행정<br>주사 | 지방<br>기업행정<br>주사보 | 지방<br>기업행정<br>서기 | 지방<br>기업행정<br>서기보 |             |
|       |    | 건설  | 건설<br>관     |                           |             |              | 지방건설<br>사무관       | 지방건설<br>주사       | 지방건설<br>주사보       | 지방건설<br>서기       | 지방건설<br>서기보       |             |
|       |    | 사서  | 사서<br>관     |                           |             |              | 지방사서<br>서기관       | 지방사서<br>사무관      | 지방사서<br>주사        | 지방사서<br>주사보      | 지방사서<br>서기        | 지방사서<br>서기보 |
|       |    | 2. 공공   | 기계          | 일반기계<br>농업기계<br>기계운전<br>조 | 지방공민<br>이사관 | 지방공민<br>부이사관 | 지방공민<br>서기관       | 지방기계<br>사무관      | 지방기계<br>주사        | 지방기계<br>주사보      | 지방기계<br>서기        | 지방기계<br>서기보 |
|       |    |   |             | 전기                        |             |              |                   | 지방전기<br>사무관      | 지방전기<br>주사        | 지방전기<br>주사보      | 지방전기<br>서기        | 지방전기<br>서기보 |
| 금속    |    |   |             |                           |             | 지방금속<br>사무관  | 지방금속<br>주사        | 지방금속<br>주사보      | 지방금속<br>서기        | 지방금속<br>서기보      |                   |             |
| 섬유    |    |   |             |                           |             | 지방섬유<br>사무관  | 지방섬유<br>주사        | 지방섬유<br>주사보      | 지방섬유<br>서기        | 지방섬유<br>서기보      |                   |             |
| 화학    |    |   |             |                           |             | 지방화학<br>사무관  | 지방화학<br>주사        | 지방화학<br>주사보      | 지방화학<br>서기        | 지방화학<br>서기보      |                   |             |
| 자원    |    |   |             |                           |             | 지방자원<br>사무관  | 지방자원<br>주사        | 지방자원<br>주사보      | 지방자원<br>서기        | 지방자원<br>서기보      |                   |             |
| 3. 농업 | 농업 | 일반농업<br>장<br>식물병해<br>충퇴학                              | 지방농업<br>이사관 | 지방농업<br>부이사관              | 지방농업<br>서기관 | 지방농업<br>사무관  | 지방농업<br>주사        | 지방농업<br>주사보      | 지방농업<br>서기        | 지방농업<br>서기보      |                   |             |
|       |    | 임업  |             |                           | 지방임업<br>서기관 | 지방임업<br>사무관  | 지방임업<br>주사        | 지방임업<br>주사보      | 지방임업<br>서기        | 지방임업<br>서기보      |                   |             |
|       |    | 축산  | 지방축산<br>이사관 | 지방축산<br>부이사관              | 지방축산<br>서기관 | 지방축산<br>사무관  | 지방축산<br>주사        | 지방축산<br>주사보      | 지방축산<br>서기        | 지방축산<br>서기보      |                   |             |

제12606호(그2)

관 보

1993. 12. 31. (금요일)

| 계급    | 직명   | 직류   | 계급            |                |               |               |              |               |               |                |             |              |
|-------|------|--|---------------|----------------|---------------|---------------|--------------|---------------|---------------|----------------|-------------|--------------|
|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수시    | 수시   | 일반수업<br>수업준조<br>수업준조<br>수업준조<br>수업준조<br>수업준조 |               |                | 지방수업<br>서기관   | 지방수업<br>부이사관  | 지방수업<br>서기관  | 지방수업<br>사무관   | 지방수업<br>주사    | 지방수업<br>주사보    | 지방수업<br>서기관 | 지방수업<br>서기관보 |
|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지방보건의료<br>서기관 | 지방보건의료<br>부이사관 | 지방보건의료<br>서기관 | 지방보건의료<br>사무관 | 지방보건의료<br>주사 | 지방보건의료<br>주사보 | 지방보건의료<br>서기관 | 지방보건의료<br>서기관보 |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                |               | 지방식품위생<br>사무관 | 지방식품위생<br>주사 | 지방식품위생<br>주사보 | 지방식품위생<br>서기관 | 지방식품위생<br>서기관보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               | 지방의료기술<br>사무관 | 지방의료기술<br>주사 | 지방의료기술<br>주사보 | 지방의료기술<br>서기관 | 지방의료기술<br>서기관보 |             |              |
|       | 외무   | 일반외무   | 지방외무<br>서기관   | 지방외무<br>부이사관   | 지방외무<br>서기관   | 지방외무<br>사무관   |              |               |               |                |             |              |
|       | 학예   | 학예   | 지방학예<br>서기관   | 지방학예<br>부이사관   | 지방학예<br>서기관   | 지방학예<br>사무관   | 지방학예<br>주사   | 지방학예<br>주사보   |               |                |             |              |
| 5. 문화 | 문화   | 일반문화<br>수대<br>예기                             | 지방문화<br>서기관   | 지방문화<br>부이사관   | 지방문화<br>서기관   | 지방문화<br>사무관   | 지방문화<br>주사   | 지방문화<br>주사보   | 지방문화<br>서기관   | 지방문화<br>서기관보   |             |              |
|       | 교양   | 교양   | 지방교양<br>서기관   | 지방교양<br>부이사관   | 지방교양<br>서기관   | 지방교양<br>사무관   | 지방교양<br>주사   | 지방교양<br>주사보   | 지방교양<br>서기관   | 지방교양<br>서기관보   |             |              |
| 7. 시설 | 건축   | 일반건축<br>건설<br>건설                             | 지방건축<br>서기관   | 지방건축<br>부이사관   | 지방건축<br>서기관   | 지방건축<br>사무관   | 지방건축<br>주사   | 지방건축<br>주사보   | 지방건축<br>서기관   | 지방건축<br>서기관보   |             |              |
|       | 도로   | 도로   | 지방도로<br>서기관   | 지방도로<br>부이사관   | 지방도로<br>서기관   | 지방도로<br>사무관   | 지방도로<br>주사   | 지방도로<br>주사보   | 지방도로<br>서기관   | 지방도로<br>서기관보   |             |              |
|       | 수도   | 수도   | 지방수도<br>서기관   | 지방수도<br>부이사관   | 지방수도<br>서기관   | 지방수도<br>사무관   | 지방수도<br>주사   | 지방수도<br>주사보   | 지방수도<br>서기관   | 지방수도<br>서기관보   |             |              |
|       | 전력   | 전력   | 지방전력<br>서기관   | 지방전력<br>부이사관   | 지방전력<br>서기관   | 지방전력<br>사무관   | 지방전력<br>주사   | 지방전력<br>주사보   | 지방전력<br>서기관   | 지방전력<br>서기관보   |             |              |
|       | 지하   | 지하   | 지방지하<br>서기관   | 지방지하<br>부이사관   | 지방지하<br>서기관   | 지방지하<br>사무관   | 지방지하<br>주사   | 지방지하<br>주사보   | 지방지하<br>서기관   | 지방지하<br>서기관보   |             |              |
|       | 육지   | 육지   | 지방육지<br>서기관   | 지방육지<br>부이사관   | 지방육지<br>서기관   | 지방육지<br>사무관   | 지방육지<br>주사   | 지방육지<br>주사보   | 지방육지<br>서기관   | 지방육지<br>서기관보   |             |              |
| 8. 통신 | 통신   | 통신   | 지방통신<br>서기관   | 지방통신<br>부이사관   | 지방통신<br>서기관   | 지방통신<br>사무관   | 지방통신<br>주사   | 지방통신<br>주사보   | 지방통신<br>서기관   | 지방통신<br>서기관보   |             |              |
|       | 통신기술 | 통신기술   |               |                |               | 지방통신<br>사무관   | 지방통신<br>주사   | 지방통신<br>주사보   | 지방통신<br>서기관   | 지방통신<br>서기관보   |             |              |
|       | 전자통신 | 전자통신   |               |                |               | 지방전자통신<br>사무관 | 지방전자통신<br>주사 | 지방전자통신<br>주사보 | 지방전자통신<br>서기관 | 지방전자통신<br>서기관보 |             |              |

제12606호(그2)

관 보

1993. 12. 31. (금요일)

◇地方公務員任用令 改正理由

地方公務員法이 개정됨('93. 12.27. 法律 第4613號)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人事委員會가 관장하는 昇進·轉補任用基準에 관한 審議對象을 정하고, 아울러 公務員任用令의 改正에 맞추어 일부 職階의 調整등 관련규정을 整備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昇進·轉補任用基準에 관한 人事委員會의 事前審議對象을 昇進의 경우에는 全 公務員, 轉補의 경우에는 市·道에서는 5級이상, 市·郡 및 自治區에서는 6級이상으로 함(令 第8條의2).
- 나. 소속公務員의 능력개발이나 地方政策樹立과 관련된 特殊業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民間機關·團體에 도 公務員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의2).
- 다. 종전에는 海外留學을 위하여 休職한 경우 그 休職期間에 대하여 經歷評定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休職期間의 5割에 相當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도 이를 制限한 것으로 보아 評定하도록 함(令 第31條의6).
- 라. 시·도 各 對두되는 專門行政業務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公務員任用令의 公職分類體系에 맞추어 教育行政·都市計劃등의 職階를 新設하는 등 地方公職分類體系를 改定함(令 別表 1). <별제처 제공>

大田廣域市教育委員會議事局的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 6. 1.

文教社會 委員會

I.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5. 5. 25. 大田廣域市 教育監

나. 回 附 日 字 : 1995. 5. 29.

다. 上 程 日 字 : 第42回 大田廣域市 議會(臨時會)

第 1 次 文教社會 委員會(1995. 6. 1)

上程, 審查, 議決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管理局長)

1. 提 案 理 由

- 大田廣域市 教育委員會 議事局的 境遇 總務擔當官室과 議事擔當官室로 業務가 二元化되어 있어 教育委員會 支授業務에 어려움이 擡頭 되어 왔는 바
- 總務擔當官室을 廢止하고 議事擔當官室에 議事係를 新設, 業務의 一元化로 教育委員會 運營에 效率을 기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 總務擔當官室의 廢止로 總務擔當官을 削除하고 議事擔當官室에 議事係를 新設하여 議事係長을 「地方教育行政 事務官」으로 함.(案 第4條 3項 및 4項)
- 地方公務員 任用令 改正(大統領令 14042호 : '93.12.31)으로 教育行政職列의 新設에 따라 「地方行政 事務官」을 「地方教育行政 事務官」으로 함. (案 第4條 3項)

##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鎮鎬)

- 本 案件은 現行 教育委員會 議事局의 業務가 總務擔當官室과 議事擔當官室로 二元化 되어있어 教育委員會 支援 業務遂行에 迅速성이 缺如되어 왔는바 一貫性있는 業務의 推進을 위하여 總務擔當官室을 廢止하고 議事擔當官室에 議事係를 新設코자 하는 事項으로써  
  
그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 廢止되는 總務擔當官室의 業務를 議事擔當官室에 係職制를 新設하여 教育委員會 支援業務를 一元化하므로써  
  
迅速한 業務의 處理, 權限과 責任의 明確性, 그리고 事務局에 대한 位相定立으로 執行廳과 同等한 組織體系로 教育委員에 대한 支援能力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職制改編으로 思料됨 .

IV. 討 論 要 旨 : 省 略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VI. 審 查 結 果 : 原 案 可 決

VII. 其 他 必 要 的 事 項 : 없 음